

제11차 실행이사회

○일시 : 1986. 8. 13(수) 12:00 - 13:40

○장소 : 외교구락부 대홀

(협의사항)

1. 의료법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견 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해 본회 의견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아 보사부에 제출키로 하다.

첫째, 동 법률(안) 제3조의 종합병원에 정신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항은 상정된 안에 명시된 사유외에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정신보건법(안) 제9조(정신과설치)와 상충된다는 사유를 첨가하여 일단 본회로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300병상이상 병원으로 병상규모를 명시하는 문제는 막후 교섭시 재협의.

둘째, 동 법(안) 제20조(기록열람등)의 진료기록(사본)의 송부제도는 장기 입원환자의 경우 기록이 많기 때문에 전량의 사본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할 때는 「치료경위서」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기록전량 사본은 병원의 업무량 과중과 비용낭비를 초래하므로 「필요한 부분의 사본」으로 조정토록 하되 임상검사 소견서(사본)는 불필요한 재검사를 억제하고 환자진료에 참고가 될 뿐 아니라 환자부담도 경감하게 되므로 그 송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이 합리적이라는 조정의견을 제시.

셋째, 동 법(안) 제43조 및 45조의 의료법인의 보고 및 검사와 임원의 개선평명에 대해서는 상정된 원안에 명시된 사유대로 동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

넷째, 동 법(안) 제59조의 9(공제사업)의 신설조항은 의사들의 공제사업이 자율에 맡겨져야 함에도 국가 공권력이 개입하여 법적으로 강제 가입시키게 됨으로써 병원 특히 중소규모병원의 경영압박을 가중시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고문 의견대로 동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

제12차 실행이사회

○일시 : 1986. 8. 22(금) 07:30-09:15

○장소 : 본회 회의실

(협의사항)

1. 진료실태 점검결과 대책

사회정화위원회, 보사부, 병협 및 의협이 합동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소재 36개 의료기관의 진료실태 점검('86. 7. 7-7. 16)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책을 협의하다.

가.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액중 과잉진료, 과잉투약 등으로 종합병원의 삭감률이 5-20% 라는 지적은 보험자가 기 발표한 평균 삭감률 1-2% ('85의료보험 통계연보 페이지 326, 330)와 차이가 현격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국민적인 오해가 조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경위를 확인함과 동시에 본회 의료보험연구위원회를 통하여 실제삭감률과 삭감내용을 조사 후, 보험자단체의 상근 실사위원들과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심사기준이 각기 상이하여 정당한 투약과 요양급여마저 부당삭감된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

나. 대부분의 병원이 간호원 정원미달의 지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4 (의료인 등의 정원)에서 『간호원 정원의 일부를 간호보조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사부로부터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해명.

2. 제2차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 특별강연자 선정

'86. 11. 28-11. 29간에 개최되는 제2차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 특별강연자는 각자 적당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차기 실행이사회에서 재협 의기로 하다.

제13차 실행이사회

○일시 : 1986. 8. 29(금) 07:30-09:10

○장소 : 본회 회의실

(협의사항)

1. “치료 경위서” 양식 제정

의료법 개정법률(안) 제20조(기록열람 등)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하도록 하자는 대한변호사회의 의견은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이나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회로서는 이에 반대하되 대안으로서 “치료경위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제정하여 당국에 제출하고, 양식 제정은 김세민 법제이사 주관으로 김영명 표준화이사와 협조하여 성안 후 차기 실행이사회에 상정키로 하다.

2. 의료법 개정법률(안) 대책

동안에 대한 당국의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본회 의견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실무 접촉을 보다 강화하고 필요시 협회차원에서도 저지책을 추진키로 하다.

3. D.R.G. 제도 대책

동제도가 의료비 상승 억제 등에 효과가 있다하여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와는 의료제도 및 의료수준 등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적용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므로 동 제도를 연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부설 병원연구소 신영수 교수와 빈번히 접촉하여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다.

4. 사무국 개편 문제 논의

본회 정책연구기능을 전담할 기구의 신설을 전제로 사무국 개편에 관한 논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박성덕 이사 제의)규정 개정 소위원회에서 검토키로 하다.

(승인사항)

1. 제 6 차 의료보험 해외 연수

실무자에 대한 해외연수 성과와 대상자 인선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연수출발전에 구체적으로 연수과제를 부여하고 연수후에는 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등 연수성과를 제고시키기로 하고 인선문제는 회장단에 위임키로 하다.

2. 제 2 차 병원관리 종합 학술대회 특별 강연자 선정

'86. 11. 28-11. 29간에 개최되는 제 2 차 병원관리 종합 학술대회 특별 강연자 선정은 회장단에 위임키로 하다.

■編輯委員：韓斗鎭·朴利甲·金世民·黃泰植·林隆義

대한병원협회지

(通卷 137 號)

'86년 9월호(月刊)

등록일자: 1972년 4월 27일

등록번호: 제 라 1691호

인쇄일: 1986년 8월 31일

발행일: 1986년 9월 1일

發行人: 白樂皖

編輯人: 黃泰植

印刷人: 朴善奎

발행소 社團法人 大韓病院協會

우편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 가 49 전화: 272-8905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Vol 15, No. 9

Sep. 1986

Publisher : Nak Whan Paik
Editor in Chief : Tae Sik Hwang

Published Monthly

by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49, 2-Ga, Chung Moo-Ro,
Seoul, Korea TEL. 272-8905

*이 協會誌에 게재된 내용은 반드시 본회의 公式的인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